

『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3월 23일

나. 발 의 자 : 박광석, 권기만, 길윤옥, 김상조
김익수, 박교상, 박순이, 임춘구
장세만, 전인철, 정근수 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4월 6일

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 광 석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,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, 학교정화구역, 버스정류소, 택시승강장 등의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-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,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며 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관내에서 발행되는 언론매체(잡자신문·방송 등)에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, 문화·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, 금연활동사업과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, 제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-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의 목적에 따라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,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코자 우리시의 금연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임
- 주요 제정내용은
 - 조례는 총 10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, 범위를 규정하고

- 안 제4조 금연권장구역은 도시공원, 학교정화구역, 버스정류소, 택시승강장 등으로 지정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며 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안 제6조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·신문·방송 등 언론매체에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, 문화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안 제8조 및 제 9조 효과적인 금연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·지원토록 하고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,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
- 단순한 권고와 행정지도로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, 시민을 강제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이도 조례제정은 가능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